

의안번호	2200178
의 퇴 인	남인순 의원
회 답 일	2024.6.12.
추 계 번호	24B05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육아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봄.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6호)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규정
2	안 제37조(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항) 1. ~ 3. (생략)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육아휴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37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내용이므로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시행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후 육아휴직이 자동 시행되므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²⁾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이며, 「고용보험법」 제70조³⁾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 2023년 기준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인원 및 사용기간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표 2]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

(단위: 개월)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휴직	9.4	9.5	9.4	9.5	9.0	8.9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육아휴직 수급자 수와 육아휴직이 자동 시행될 경우를 비교하여 장래 출산 인구 중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장래의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첫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신청되지 않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서면의 형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근로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둘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자동시행에 따라 “추가 사용할 사람의 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용기간” 및 “보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 사용 행태를 현시점에서 알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